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0. 10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0. 10

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0. 16

(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임 양 환

나. 개정사유

- 정부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지침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 오던 각종 인.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인.허가와 관련한 주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.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

다. 주요내용

- 課의 명칭 변경(안 제3조 제1항) : 민원봉사과 > 종합민원처리과
- 부서별 소관 업무의 조정(안 제3조 제2항 제4, 6, 7호)

실과별	현 행	개 정 안	비고
민원 봉사과	(신설)	• 위생.환경.농지에 관련된 복합민원처리	
사 회 복지과	•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, 관리에 관한 사항 •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, 관리에 관한 사항	•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, 관리(유흥.단란주점 허가제외)	
환경과	• 수질관련 허가 및 지도, 단속 에 관한 사항 • 오수,분뇨,축산폐수 관련허가 및 지도,단속에 관한 사항	• 오수,분뇨,축산폐수 관련 허가 및 지도,단속에 관한 사항 (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제외)	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“시군의 인.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”에 의거 그동안 몇개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인.허가 기능을 1개부서로 일원화 하여 인.허가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인.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,
- 민원봉사과의 명칭을 “종합민원 처리과”로 변경하여 사회과와 환경과등에서 처리하던 위생.환경.농지에 관련된 복합민원을 처리 관장토록 하였음.
-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인.허가 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주민의 불편사항과 시간적.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원인과 인.허가 담당 공무원간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되어 보다 책임있고 투명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- 그러나, 업무의 이관과 함께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.기술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, 기존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어려울 것인바,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신설된 종합민원 처리과의 업무 분장중 “위생.환경.농지에 관련된 복합 민원 처리”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부서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허가(사회복지과 소관)와 오수.분뇨.축산폐수관련허가(환경과 소관)업무도 종합민원 처리과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등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자세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- 조례규치 심의회는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사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"원안의결"

첨 부 :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중 "민원봉사과"를 "종합민원처리과"로 하고,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종합민원처리과

- 민원실 운영 및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
- 민원사무 창구 즉결처리에 관한 사항
- 민원 1회 방문처리 종합에 관한 사항
- 행정사업에 관한 사항
- 차량·중기 등록에 관한 사항
- 도시계획확인원·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
- 외국인 토지관리 및 취득에 관한 사항
- 지적민원 처리 및 지적공부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
- 토지분할 허가 및 이동지 검사 정리에 관한 사항
-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
-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및 대행법인 지도, 감독에 관한 사항
- 법인 아난 사단·재단 등록번호 및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
-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
- 부동산중개업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- 지가의 결정·공개 및 열람에 관한 사항
- 토지 공개념에 관한 사항
-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
- 위생·환경·농지에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
- 건축 일반에 관한 사항
-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
- 주택개량등 주거환경 및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
- 병무행정 및 공익근부에 관한 사항

제3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사회복지과

- 저소득 주민보호· 구호· 원호 업무에 관한 사항
- 복지시책 및 사회복지 법인에 관한 사항
-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
- 이재민 대책에 관한 사항
-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, 관리(유흥· 단란주점 허가 제외)
- 부정· 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의 유통· 관리에 관한 사항
-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
- 이용사· 비용사· 조리사 민허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
- 여성,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
-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
- 보육에 관한 사항
- 농촌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
-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
- 묘지, 화장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항

7. 환경과

-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· 시행에 관한 사항
-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
- 환경통계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사항
-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
-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
-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
- 민간환경단체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
-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, 단속에 관한 사항
-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및 지도· 단속에 관한 사항
- 대기 관련 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

- 소음·진동 관련 허가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- 환경신문고 및 환경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오수·분뇨·축산폐수 관련 허가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(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제외)
- 분뇨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항
-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- 특정시설 설치 신고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- 수질 측정망 고시 운영에 관한 사항
- 하천·호소·수질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
-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
-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사항
- 공원·유원지·관광지 등 폐기물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
- 폐기물 관련 허가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- 자연보호 관련 입무에 관한 사항
- 자연 생태계 및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
-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
- 재활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
- 토양환경 보전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- 청소인력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
-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-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-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상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상수도 대행입소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
- 상수원 및 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-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, 시행에 관한 사항
-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- 온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농촌 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단속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~제2조(생략)	제1조~제2조(현행과 같음)
제3조(실·과의 설치)① 군의 - - - - -	제3조(실·과의 설치)① 군의 - - - - -
- - - - -	- - - - -
- - - - -	- - - - -
<u>민원봉사과</u> , - - - - -	<u>종합민원처리과</u> , - - - - -
- - - - -를 둔다.	- - - - -를 둔다.
② - - - - -	② - - - - -
- - - - -	- - - - 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민원봉사과</u>	4. <u>종합민원처리과</u>
- - - - -	- - - - -
.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	.(현행과 같음)
(신설)	.위생·환경·농지에 관련된 복합
- - - - -	민원 처리
.건축 일반에 관한 사항	.(현행과 같음)
5.문화관광과(생략)	5.문화관광과(현행과 같음)
6.사회복지과	6.사회복지과
- - - - -	- - - - -
.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	.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, 관리
관리에 관한 사항	(유흥·단란주점 허가제외)
.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관리	(삭제)
에 관한 사항	- - - - -
.부정·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의	.(현행과 같음)
유통·관리에 관한 사항	- - - - -
- - - - -	- - - - -
7.환경과	7.환경과
- - - - -	- - - - -
.환경신문고 및 환경명예감시원	.(현행과 같음)
운영에 관한 사항	- - - - -
.수질 관련 허가 및 지도, 단속에	.(삭제)
관한 사항	- - - - -

현행	개정안
<p><u>오수·분뇨·축산폐수 관련 허가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분뇨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-----</p>	<p><u>오수·분뇨·축산폐수 관련 허가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 (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제외)</u></p> <p><u>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-----</p>
8. ~ 16. (생략)	8. ~ 16. (현행과 같음)